

경상북도 소공인 AI 콘텐츠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에서는 도내 식품 및 화장품 산업 관련 소공인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소공인 AI 콘텐츠 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0일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 (필독)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

- 발생사유에 관계없이 **공고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 제출서류 및 정보관련, **경북테크노파크에서 별도의 보완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 필수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의 수혜 소공인은 사업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전/후 발생하는 사업비 지원 불가합니다.
(예시 : 협약기간 전/후 카드결제, 송금한 내역 등)
- ★ 본 사업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며, **대표자 포함된 증빙서류 제출**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식품 및 화장품산업 관련 소공인의 AI를 활용한 이미지 및 디자인 제작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브랜드 시각화 역량강화

나. 지원규모 : 10개사

다. 지원대상 : 경북도 내 본사를 둔 식품제조업 및 화장품제조업 소공인

라.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1월 10일

*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성 있음

마. 신청방법 :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 사업공고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전산 접수

* 사업공고 > 해당 사업 우측  버튼 클릭

바. 지원내용

항목	내용
AI디자인 제작비 지원 (10개사)	AI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용 이미지, 상세페이지, 광고영상 등 디자인 제작 지원

사. 지원금액 : 4백만원 지원(기업부담금 10% 이상 별도)

구분	지원금액(천원)	기업부담금(현금)
AI디자인 제작비 지원	4,000	지원금의 10% 이상 (400천원 이상)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는 자기부담금 외 별도 부담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및 결과물 산출(결과보고서 등)까지 협약기간 내 진행 必

ex) 지원금이 4,000천원 일 경우 예시

수행주체	수행내역	금액(예시)
① 공급기업 → 수혜기업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4,400천원/부가세 440천원)	4,840천원
② 수혜기업 → 공급기업	자부담+부가세 입금	840천원
③ 수혜기업 → 경북TP	총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자부담+부가세 입금증, 결과보고서 등 제출	-
④ 경북TP → 공급기업	지원금 이체	4,000천원

2.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식품제조업 및 화장품제조업** 소공인*

* **경상북도 內 본사를 두고 있는 소공인만 신청 가능**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 C11, C20**)

***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 및 2026년 수혜 소공인 사업신청 불가

나. 자격요건

○ 신청마감일('26.9.16.)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휴·폐업 및 부도	○ 공고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다. 공급업체 : 지원기업이 개별적으로 공급기업 선택하여 지원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6. 9. 10.(목) ~ 9. 21.(월)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구분	신청방법
신청서 접수 방법	-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gbtp.or.kr) 경상북도 소공인 AI 콘텐츠 마케팅 지원 모집공고→첨부파일 양식 다운→우측 [신청버튼] 클릭 후 업로드하여 제출 - 신청서 제목 및 파일명 : 경상북도 소공인 AI콘텐츠 지원_기업명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완료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음

다. 신청서류(아래표의 순서대로 **하나의 PDF로 병합하여 제출** 요망)

구분	연번	제출서류	
필수 서류	1	▶ <서식1> 온라인 콘텐츠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서식2> 수행계획서(5장 이내) ▶ <서식3> 현금출자 협약서 ▶ <서식4, 5, 6> 평가결과 수락 협약서, 중복지원 금지사항 협약서, 성실의무이행 서약서	
	2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급기업 견적서(본견적서, 비교견적서 각 1부)	
	3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대표자 명의 서류 모두 제출 *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必	
	4	▶ 사업자등록증명원(업태 : 제조업 必)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5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하여야 하며, 소상공인 명시 필수	
	6	▶ [붙임 5]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해당시)	
	7	2개 중 택 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1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1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제출 ※ 25년도 서류발급 불가한 경우 24년도 서류로 대체 (단, 공고시작일 기준 창업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붙임5]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제출 가능)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하며 유효해야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없을시, 상시근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라. 서류 발급정보 ※ 아래서류 관련 문의사항은 발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서류	발급처	사이트 주소 및 연락처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 - 부가가치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신고서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4. 선정방법

가. 평가절차 : 자격확인 → 평가(서류) → 최종선정

- (평가) 소공인 여부, 필수 제출서류 완비 여부를 포함하여 심사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

* 신청자격 미충족, 필수서류 미제출 소공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제출 시, 공급업체의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반드시 첨부

나. 평가항목

- (평가) 평가항목 별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지원필요성 (20)	■ 사업 이해도, 사업 수행 타당성 등	10
		■ 보유 기술 및 역량의 전문성	10
	지원내용의 타당성 (25)	■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수행계획의 구체성 등	15
		■ 지원금액의 적정성	10
	제품역량 (35)	■ 기술 및 품질경쟁력, 시장성 및 비교우위력등	15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시장성, 유사제품과의 차별성	20
	기대효과 (20)	■ 향후 파급효과(매출, 고용, 지역경제 등)	10
		■ 성장가능성 및 사업화 가능성	10
총 점			100

5. 추진절차(안)

공고	신청·접수	평가	협약
광역전담기관 (재)경북테크노파크 ~ 9월 21일	▶ 광역전담기관 (재)경북테크노파크 ~ 9월 21일	▶ 평가위원회 ~9월 28일 예정	▶ 소공인↔경북TP 10월
사업수행	결과보고	사업비 정산	
소공인 협약일~11월10일	▶ 소공인→경북TP *결과보고서 및 정산자료 제출 ~11월 중	▶ 소공인, 공급기업↔ 경북TP 11월 중	

*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접수 · 문의처

가. 접수 및 문의처

구 분	담 당 자	문 의	접수처
사업문의	경북테크노파크 지역기업활력지원실	☎ 054-339-3352	(재)경북테크노파크 온라인 접수 (사업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

7. 유의사항

신청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경우 신청완료(제출) 이후 수정 불가합니다. ▶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의 미비나 누락, 신청 시 기재착오 등의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신청취소 또는 신청탈락)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 기업에게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여부 판단은 경북테크노파크에 있습니다
선정	▶ 평가 시 신청서 내용에 대하여 유선으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 선정 결과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
기타	▶ 공고마감 이후 추가보완은 불가하며, 필수서류(수행계획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를 미제출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협약기간 전/후 발생하는 사업비 지원 불가(예시 : 협약기간 전/후 카드결제, 송금한 내역 등) ▶ 기업은 공급업체 선정 시, 소공인의 대표와 특수거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거래법 부당 공동행위 위반(담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급업체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합니다.

붙임1**지원업종(중분류)**

대분류	분류코드	중분류	매출액 기준	상시근로자
제조업	C10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C11	음료 제조업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화장품 포함)		

붙임2**소상공인 및 업종 확인 기준****소상공인 확인 기준****1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① 중 소상공인^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③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②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③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2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③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②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사업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24. 11. 20	'26. 3. 25	(직전 사업연도) '25년 1월~'25년 12월
예시2	'25. 2. 5		(최근 12개월) '25년 3월~'26년 2월

④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 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 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26.4.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2025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24년 11월 2일, 신청일: '26년 1월 제출기간: '25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25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25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25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④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개정 2021.12.30.>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①~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①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③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④ 소상공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⑤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업종 구분 방법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❶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❷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❸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징구

붙임3**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양식****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업종) (예 : 제조업+도소매업)		
주업종명(업종코드)* (예 : 식료품 제조업(C10))		

* [붙임1] 소공인 업종 및 기준을 확인하여 부합하는 업종명과 코드기재

위와 같이 실제 영업 중임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불가, 관련 국고보조금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명)

(재) 경 북 테 크 노 파 크 앞